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Office of Tax and Revenue



날짜: 2009 년 10 월 8 일

수신: DC 담배에 관련된 모든 소매업자, 자동판매기 운영자 및
가판대 상인

제목: 담배, 리틀 시가 및 습식 코담배 소비세 인상

게시 번호: **2009-08**

2009 년 10 월 1 일부터 콜럼비아 특별구의 담배 소비세가 인상되며 "리틀 시가" 및 "습식 코담배"에 신규 세금이 적용됩니다. 담배 소비세가 담배 한 개비당 10 센트에서 12.5 센트로 증가하므로 세금이 담배 20 개비 한 갑당 2.5 달러로, 담배 25 개비 한 갑당 3.125 달러로 오릅니다. "리틀 시가"는 한 개당 12.5 센트의 판매세 또는 소유세가 부과됩니다. "리틀 시가"란 무게가 천개당 4.5 파운드 이하인 모든 시가를 말하며 고급 시가는 제외됩니다. 또한 "습식 코담배"는 온스당 30 센트의 판매세 또는 소유세가 부과됩니다. "습식 코담배"란 가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혹은 분말 형태로 되어 있으며 비강에 넣어서 사용하지 않는 무연 담배(Tobacco)를 말합니다.

새로 적용되는 소비세율은 이전에 납세 인지가 찍힌 담배 재고품을 비롯하여 자동판매기 담배와, 워싱턴 DC 지역에서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도/소매업자 및 가판대 상인이 보유한 리틀 시가 및 습식 코담배의 모든 재고품에 적용됩니다.

Floor tax 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2009 년 10 월 1 일 영업 시작 이전에 DC 납세 인지가 찍힌 모든 담배와 리틀 시가 및 습식 코담배 재고품에 대해 실지 재고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 Floor tax 신고서와 지침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와 납입금을 2009 년 10 월 21 일까지 Office of Tax and Revenue, Audit Division, Cigarette Tax Enforcement Unit, P.O. Box 556, Washington, DC 20044 로 보내 주십시오. 2009 년 10 월 21 일까지 Floor tax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 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법인은 법인의 모든 지사를 대표하여 신고서 및 세금을 통합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신고서 제출시, 각 지사의 **Floor tax** 적용 담배, 리틀 시가 및 습식 코담배 재고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사는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재고 목록 및 **Floor tax** 신고서의 사본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법인이 각 지사가 개별적으로 **Floor tax**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개별 **Floor tax** 신고서 작성 지침이 적용됩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모든 자동판매기의 위치 목록과 **Floor tax** 신고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세금은 자동판매기의 실제 재고 또는 신고서에 명시된 기계당 일률 과세 납입으로 계산됩니다.

본 통지서에는 담배 **Floor tax** 신고서 유용한 질의응답(**FAQs**) 형식의 참고자료가 동봉되었으며, 본 통지서 사본 및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FAQ** 는 웹사이트 www.taxpayerservicecenter.com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Floor tax** 신고서와 지침서가 필요한 분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의 변경 사항에 관련된 질문은 세무서(**Office of Tax and Revenue**), 감사과(**Audit Division**) 직통 전화 (202) 442-6602 또는 이메일 sherri.weithers@dc.gov 로 문의하십시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